

보도 일시	2022. 5. 15.(일) 12:00 2022. 5. 16.(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5. 15.(일) 12:00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044-202-7432)
		담당자	사무관 정다비 (044-202-7436)

공정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5.16.~6.30.)
- 국정과제 및 이정식 장관의 '공정 채용 질서 확립' 의지의 실행을 위한 첫발

-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5.16.부터 6.30.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정'은 새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 이에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신임 이정식 장관도 취임식에서(5.11.)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 * 국정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22년 상반기 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운영 방향

- ①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감 있게 추진
- ②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 ③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 사업장 점검('21년 하반기 대비 30.7%↑)
- ④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병행하고 점검 결과 피드백을 통해 노사의 공정채용 확산 노력 뒷받침

① 먼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점검을 추진한다.

(5.16.~5.27.) **자율개선 지도**<1,800개 사업장> → (5.30.~6.10.) **집중 신고기간 운영**
→ (6.13.~6.30.) **현장 지도·점검**<600개 사업장> * 일정과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 항목: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 [붙임1] 참고

② 다음으로,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한다.

-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③ 세 번째로,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현장점검 사업장 수: ('21년 하반기) 459개 → 600개 이상, 30.7% ↑

-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예>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120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120개소는 전체 점검 사업장(600개)의 20%를 차지하며, '21년 하반기 건설현장 점검 규모(71개소) 대비 69.0% 증가

** 정부 합동 "건설현장 신고센터": 044-201-4112 / con112@korea.kr

④ 마지막으로, 현장점검이 **공정 채용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 (예) 능력중심 채용모델 보급, 채용 전형 단계별 기업 맞춤형 능력중심 채용 콘텐츠 지원 등

- 아울러, 주요 위반 유형, 우수·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하여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살펴보고 점검하겠다.”라며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온 라 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신고

- [붙임]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안내 카드뉴스

붙임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① (제재규정)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직무무관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 반환 등 → 중점 점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제재수단
거짓채용광고 금지 (제4조제1항)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광고 내용·근로조건 변경 금지 (제4조제2항·3항)	■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내용의 불리한 변경 및 채용 이후 채용광고보다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강요 등 금지 (제4조의2)	■ ①법령 위반 채용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②채용 관련 금품 등 제공·수수 금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	■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수집 금지 -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구직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제9조)	■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등 (제11조)	■ 서류반환 요구 시 반환 의무 및 미반환 채용서류 파기 ■ 서류 반환 비용 구인자 부담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 반환 청구 대비, 보관 의무 ■ 서류 반환, 폐기 등에 대한 규정 고지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② (권고규정) 표준이력서, 채용 합격/불합격 여부, 입증자료 제출 제한 등 → 이행 여부 확인 및 준수 협조 당부

구분	주요 내용
표준이력서 권장(제5조)	■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전자방식 서류접수(제7조)	■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제8조)	■ 채용일정, 심사지연사실, 채용과정 변경 등 알려야 함
채용여부 고지(제10조)	■ 채용대상자 확정시, 지체없이 채용여부 알려야 함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제한 (제13조)	■ 서류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



공정한 채용질서 함께 만들어 나가요!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 점검기간 운영** 
5.16(월)~6.30(목)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신고 접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업·직업·재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채용서류의 반환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